



의안번호	제 2013 - 21 호
보 고 연 월 일	2013. 12. 23. (제5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75차 전체 회의
 - 1. 일시 · 장소
 - 2. 참석자
 - 3. 주요 안건
 - 4.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5.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II. 제76차 전체 회의
 - 1. 일시 · 장소
 - 2. 참석자
 - 3. 주요 안건
 - 4.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5.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III. 제77차 전체 회의
 - 1. 일시 · 장소
 - 2. 참석자
 - 3. 주요 안건
 - 4.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5.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6.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7.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8.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IV. 향후 일정

<별첨자료>

최승원,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V”

주용완, 조석영, “제75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배임수증재범죄 관련”

함석천,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

최승원,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V”

주용완, 조석영, “제76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인자”

함석천,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

주용완, 조석영, “제76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성매매범죄”

최승원,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V”

주용완, 조석영, “제77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배임수증재, 체포
등 양형기준”

함석천,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

주용완, 조석영, “제77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변호사법위반범죄”

최승원,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V”

함석천,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

주용완, 조석영, “제77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성매매범죄”

최승원,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주용완, 조석영, “제77차 전문위원 회의자료 - 약취·유인 양형기준”

I. 제75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11. 4.(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배임수증제,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배임수증제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배임수증

(1) 양형인자

(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수사개시 전’ 제한 삭제
 - 횡령·배임, 사기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배임수증제는 뇌물범죄, 금융범죄와는 달리 재산범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배임수증에서 증재자에게 금품 등이 반환된 경우를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례에서 다수의 판결은 반환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금품 등이 반환된 이상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실시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수사개시 전, 후를 구별할 필요는 없음
-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에 대하여 반환시기를 ‘수사개시 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수사개시 전에 금품 등의 반환이 있는 경우에만 감경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엄벌을 하기 위함인데, 배임수재 범죄는 법정형,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범죄들과 동일하게 금품 등 반환시기를 제한하여 처벌을 가중할 필요는 없음
-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면 행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의 대부분 수수한 금품 등을 반환하므로, ‘수사개시 전’ 반환에 한정하여 감경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배임수재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후 반환을 감경요소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금품 등을 반환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서 증재자에게 금품 등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임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으로 제한해야 함

- 유사범죄인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도 ‘수사개시 전’ 뇌물(금품 기타 이익) 반환으로 반환시기를 제한하고 있음
- 배임수재죄가 민간부분에서의 부패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주된 보호법익도 ‘거래의 청렴성’으로 보는 이상, 행위주체에 있어서 특별법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및 뇌물수수와 양형인자를 설정함에 있어서 ‘수사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배임수증재가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 법익 역시 보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금품 등 반환시기에 관하여 이를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음

- '수사개시 전' 반환으로 반환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통일성·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나)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

- 뇌물수수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는 '수뢰 관련 부정처사',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
-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대출액 등을 피해액으로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배임수재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례에서 피해액이 명백하게 산정된 경우도 찾기 어려움
- 또한, 배임수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조차도 불분명함
-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포함**

-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사무처리를 의뢰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수재행위의 결과 사무처리를 의뢰한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액이 산술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가중인자로 반영되어야 함

(다)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임무위배행위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부수적으로 침해하는 우연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특별가중인자로까지 반영함은 부적절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수재에 비하여 가중처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임수재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 또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해야 함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양형인자 부분과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나)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

-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배치한 것임
- 특정 수수액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여부를 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배임수재의 경우에 뇌물수수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와 동일하게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소극 가담”의 개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는 물론이고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에만 위 인자가 적용되므로, 소수의견과 같이 “공범으로서의 소극 가담”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함

-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에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여부를 정하고 있음
- “공범으로서의 소극 가담”이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거듭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

- 위 사유는 성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임
- ‘사회적 유대관계’는 금품 등 수수의 기반이 된 증재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등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임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

-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에는 위 사유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그 이유는 위와 같은 범죄 자체가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며, 위 사유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위 사유가 적용될 것임
- 따라서,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죄와 유사한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나. 배임중재

(1) 양형인자

(가)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배임수재 부분과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배임수재 부분과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5.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제109조) : 의견 일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2)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제111조) : 의견 일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u>4년</u>	3년 - 5년

(3)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 금품 수수(제110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중대 범죄라는 점은 공감
- 그러나, 징역형의 상한이 5년으로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와 징역형의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권고형량의 가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즉, 소수의견과 같이 상한과 하한을 1/3 가중하는 경우 일부 유형에서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형의 상한인 5년을 초과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제111조의 상한과 하한을 1/3 가중

나. 양형인자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제109조)

(가) 취급한 법률사무가 간단한 경우

○ 일반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

(나)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 일반 가중인자에 포함하기로 의견 일치

(다) 다른 인자

○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2)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제111조)

(가)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범현,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

칭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가중을 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음

- 자격을 사칭하는 행위 중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가능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나) 다른 인자

-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1)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2) 다른 집행유예 참작사유

-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아니함

II. 제7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11. 18.(월) 16:00 ~ 19: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노수환, 범현,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위원회 검토 지시 사항에 대한 논의

(1) 검토 지시 사항(2013. 10. 25. 제52차 전체회의)

-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의 명칭이 ‘일반 체포·감금’이고, 유기·학대 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의 명칭이 ‘일반 유기·학대’임
- 그런데, 이들 소유형에는 단순 체포·감금이나 단순 유기·학대 이외에 다른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위와 같이 정할 경우 다른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은 위 각 소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 각 소유형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논의 결과

- 아래와 같은 주무위원 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음
 - 성범죄(일반강간, 일반강제추행), 강도(일반강도), 무고(일반무고), 절도(일반절도), 폭력(일반상해·폭행·협박) 등의 범죄에서도 하나의 형량범위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유형에 대하여 ‘일반’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 위 범죄들의 경우에도 ‘일반’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소유형에 수 개의 구성요건이 포함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예컨대, 일반폭행은 폭행, 존속폭행, 공동폭행, 운전자폭행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체포·감금의 경우는 ‘보복목적 체포·감금’ 및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기·학대의 경우는 ‘중한 유기·학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이라는 문구를 각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나. 양형인자

(1)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체포·감금의 경우만 의견

이 대립되고, 유기·학대의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됨)

(가)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전)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

- 살인, 폭력, 조세 범죄 등에서 위 인자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함
- 공동감금의 사례에서 일부 행위자가 감금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 실제 판결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들 발견됨

(나)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원) :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하되, 추후 재검토 예정

- 체포·감금의 경우 범행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행위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를 상정하기 어려움

(2)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전)
: ‘자수’와 함께 ‘내부고발’을 유지

- 폭력범죄의 예에 따른 것이며,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집단으로 감금하거나 어선 등에 노동자를 감금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에서 다수의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감금 또는 학대행위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의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여 취급할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음

(나)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원) : ‘내부고발’을 삭제하여 ‘자수’만을 감경인자로 함

- 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내부고발’을 감경인자에 포함하였고, 체포·감금이나 유기·학대와 같이 폭력이 수반되는 다른 범죄들, 즉, 강도, 약취·유인,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등에서는 ‘자수’만을

감경인자로 두고 있으므로, 체포·감금과 유기·학대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

(3) 처벌불원

(가)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감경인자로 포함

- 폭력범죄의 예에 따른 것임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폭력범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 지나치게 적용이 확대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횡령·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양형인자와 같이 해석하면 무방함(폭력범죄도 동일함)

(나)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원) : ‘처벌불원’만을 감경인자로 포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포함된 사례는 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특수공무방해치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등 기본범죄가 중하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임 → 오히려 폭력범죄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체포·감금이나 유기·학대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삭제함이 타당함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역시 사기, 절도, 공갈 범죄 등 재산범죄에 특유한 인자임 → 오히려 폭력범죄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체포·감금이나 유기·학대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삭제함이 타당함
- 따라서, ‘처벌불원’만을 감경인자로 유지해야 함

(4)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체포·감금에 대하여서만 적용됨)

(가) 제1안 : 일반가중인자로 포함

- 가혹행위가 있는 중체포·감금(7년 이하)은 단순 체포·감금(5년 이하)과 법정형이 다르기는 하나, ‘2인 이상의 공동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중체포·감금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가혹행위가 수반되는 사례가 많아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처벌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위 인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가 특별감경인자(행위인자)보다 지나치게 많아지게 됨

(나) 제2안 : 특별가중인자로 포함

- 법정형이 달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만 취급함은 부적절함

(5)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 다수의견(노수환,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하여 위 제목과 같이 양형인자를 설정함

- 동종범죄 실행전과 이외에 폭력범죄 실행전과도 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에는 가중인자가 적용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됨

(나) 소수의견(범현, 조석영, 주용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로 규정함

- 체포·감금 또는 유기·학대 범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에도 동종범죄는 물론 폭력범죄의 실행전과를 가중인자로 삼고 있음

(6)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처리(체포·감금의 경우)

(가) 제1안(노수환, 범현, 조석영, 주용원) : 감경인자로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가중인자로 적용하도록 함

- 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범죄에 대하여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체포·감금 범죄도 위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폭력범죄군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나) 제2안(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

- 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범죄의 경우 범죄의 성질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것임
- 체포·감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

5.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권고 형량범위

(1)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가) 19세 이상 대상 범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나) 19세 미만 대상 범죄

○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 - 6년	4년 - 8년	6년 - 10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 - 6년	4년 - 8년	6년 - 10년

▷ 성매수 유인·권유·강요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2)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가) 19세 이상 대상 범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년 - 3년	1년6월 - 5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나) 19세 미만 대상 범죄

○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 - 4년	5년 - 7년	6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 - 6년	7년 - 9년	6년 - 10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 - 6년	7년 - 9년	6년 - 10년

▷ 성매수 유인·권유·강요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양형인자

(1) 19세 이상 대상 범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다른 범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를 정의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양형인자 정의 부분 중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는 일반감정인자인 ‘소극가담’과 거의 같은 의미이므로, 삭제함이 타당

(나) 처벌불원

○ 특별감정인자로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 다만, 양형인자의 정의를 추가 검토하기로 함

(다) 주택가, 학교 등 인접지역에서의 성매매알선

○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최근에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며, 위와 같은 요소는 양형에 직접 고려될 사유는 아님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죄질이 중한 사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2) 19세 미만 대상 범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성매수)

○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의견이 나뉨

(나)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성매수)

○ 다수의견(노수환,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위 요소를 독

립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즉, 피해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먼저 접근하는 등으로 범행을 유발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보다 죄질이 가벼우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야 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범관계에서의 범행가담과 관련된 인자이므로,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를 위 인자의 예시로 포함시킬 수는 없음

○ 소수의견(범현, 조석영, 주용완)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를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로 규정함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는 독립된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 보다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다) 동종전과(성매수)

○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동종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으로 규정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
- 소수의견은 성범죄에서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 성범죄의 경우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규정된 것이므로,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성매매 범죄에서 성범죄의 경우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
- 소수 의견과 같이 규정할 경우 벌금 전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동종전과(성범죄 포함)’로 규정

- 성매수 범죄는 성범죄와 성격이 유사한데, 성범죄에서 ‘동종누범’ 이외에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성매수의 경우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이라는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균형에 맞음

(라)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성판매 강요)

○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조석영, 주용완, 최준혁, 최진녕) : 특별감정인자에서 삭제

-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가 양형인자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유형력이나 위계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함
- 특히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에서 위와 같은 요소를 양형인자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소수의견(최승원, 함석천) : 특별감정인자로 유지

- 성매매 범죄는 성범죄와 다소 다른 특성이 있으며, 위 인자를 삭제할 경우 특별감정인자가 단 1개('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게 됨
- 유형력 또는 위계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거나 경미한 때에는 행위불법이 약하다고 보아야 함
- 성범죄 가운데 구성요건이 유사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포함) 역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를 특별감정요소로 삼고 있음

(마) 처벌불원(성판매 강요)

○ 다수의견(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특별감정인자로 포함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의 경우도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불원을 특별감정인자로 두어야 함
- 다만,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은 추가 검토하기로 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특별감정인자에서 제외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을 특별감정인자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III. 제77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12. 2.(월) 16:00 ~ 20:1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이수정,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4.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배임수재

(1) 양형인자

(가)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뇌물, 금융범죄와 동일하게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사개시 전'에 반환한 경우에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나)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만을 인자로 반영
- 뇌물수수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는 '수뢰' 관련 부

정처사',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

-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대출액 등을 피해액으로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배임수재의 경우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례에서 피해액이 명백하게 산정된 경우도 찾기 어려움
- 또한, 배임수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조차도 불분명함
-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 소수의견(이수정, 조석영, 주용완) : 금융범죄 양형기준에 준하여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인자로 반영
 - 배임수재의 경우에도 사무처리를 의뢰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수재행위의 결과 사무처리를 의뢰한 타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액이 산술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가중인자로 반영되어야 함

(다)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이수정,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 임무위배행위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부수적으로 침해하는 우연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특별가중인자로까지 반영함은 부적절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수재에 비하여 가중처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임수

재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 또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 해야 함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양형인자 부분과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나)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이수정,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

-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배치한 것임
- 특정 수수액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여부를 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배임수재의 경우에 뇌물수수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와 동일하게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여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소극 가담”의 개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는 물론이고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만 위 인자가 적용되므로, 소수의견과 같이 “공범으로서의 소극 가담”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함**

-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에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 여부를 정하고 있음
- “공범으로서의 소극 가담”이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거듭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다수의견(김혜정, 이수정,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
위원 의견에 찬성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

- 위 사유는 성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범죄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포함되어 있음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임
- ‘사회적 유대관계’는 금품 등 수수의 기반이 된 수재자/증재자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등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관련된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임

○ 소수의견(강수진, 노수환, 조석영, 주용완)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에서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밖에 범죄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함
- 뇌물, 금융범죄 양형기준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을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나. 배임중재

(1) 양형인자

- (가)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배임수재와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가)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배임수재와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5.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1)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 금품 수수(제110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제111조)와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되,
제11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제111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나. 양형인자

(1)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위반, 특히,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부분은 뇌물, 금융범죄, 배임수증재 등과는 범죄의 성질이 다소 상이하므로, ‘수사개시 전’이라는 제한을 삭제하여 수사개시 전, 후를 불문하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반환된 경우(공탁 포함)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2)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이수정,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사실상 두 인자가 중복 적용될 우려는 없으므로, 두 인자를 원안과 같이 별도로 설정하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로 수정함

○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지인을 돕기 위하여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등에는 두 인자가 중복하여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기해야 함

(3)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배임수증채와 동일한 의견 대립 있음

6.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인자

(1)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체포·감금 및 유기·학대)

-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실제 사례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2)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체포·감금·유기·학대의 경우 조직적, 집단적 범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자수'와 함께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켜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규정하기로 의견 일치

(3) 처벌불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으로 설정하되, 유기·학대의 경우에는 원안의 양형인자 정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

기로 의견 일치

※ 양형인자의 정의(밑줄 부분이 추가된 부분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4)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체포·감금에 대하여서만 적용됨)

-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달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경우이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 다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가중인자가 중복되는 것을 막도록 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주무위원 의견에 찬성하여 위 제목과 같이 양형인자를 설정함

- 동종범죄 실행전과 이외에 폭력범죄 실행전과도 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에는 가중인자가 적용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됨

○ 소수의견(이수정, 조석영, 주용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로 규정함

- 체포·감금 또는 유기·학대 범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에도 동종범죄는 물론 폭력범죄의 실행전과를 가중인자로 삼고 있음

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처리(체포·감금의 경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기로 의견 일치(살인, 성범죄, 폭력, 공갈 범죄의 경우와 같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7.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권고 형량범위 - 76차 전체회의 때와 동일하게 의견 대립

(1) 통계자료

(가) 19세 이상 대상 범죄

○ 성판매 강요

- 성판매 강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 평균형량 14월(대상사건 2건)

- 대가수수 등 성판매 강요(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 평균형량 12월(대상사건 4건)

○ 성매매 알선

- 성매매 알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평균형량 7.1월
- 영업·대가수수 등 성매매 알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 평균형량 8.1월

(나) 19세 미만 대상 범죄

○ 성매수

- 평균형량 : 7.7월 ※ 최근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향됨

○ 성판매 강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판매 강요(아청법 제14조 제1항) : 평균형량 24.5월
- 아동·청소년 대상 대가수수 등 성판매 강요(아청법 제14조 제2항) : 평균형량 35.1월

○ 성매매 알선

- 아동·청소년 대상 성판매 유인·권유(아청법 제14조 제3항) 및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아청법 제15조 제2항) : 평균형량 11.1월(성판매 유인·권유) 및 8월(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최근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상향됨
- 아동·청소년 대상 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아청법 제15조 제1항) : 평균형량 34.7월 ※ 최근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됨

(2)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이수정,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가) 19세 이상 대상 범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나) 19세 미만 대상 범죄

○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 - 6년	4년 - 8년	6년 - 10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 - 6년	4년 - 8년	6년 - 10년

▷ 성매수 유인·권유·강요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3)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가) 19세 이상 대상 범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년 - 3년	1년6월 - 5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나) 19세 미만 대상 범죄

○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2년 - 4년	5년 - 7년	6년 - 8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3년 - 6년	7년 - 9년	6년 - 10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2년 - 4년	3년 - 6년	4년 - 8년
3	업으로 성매매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3년 - 6년	7년 - 9년	6년 - 10년

▷ 성매수 유인·권유·강요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양형인자

(1) 19세 이상 대상 범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범죄의 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를 정의하기로 의견 일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 다만, 양형인자의 정의는 성범죄와 동일하게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적용이 되도록 함

(다) 학교보건위생정화구역(학교보건법) 또는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의 범행

- **제1안(이수정,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특별가중인자 또는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최근에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으며, 최근에는 성매매 범죄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음
- 학교 인접지역의 보건과 위생, 주거 지역의 생활의 평온 등은 성매매 처벌법의 보호법익과 무관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의 양형인자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 **제2안(강수진, 노수환)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실제로 학교 또는 주거시설 인접지역에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지역에서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소 가중처벌을 할 필요는 있음
- 다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일반가중인자로만 반영하기로 함

- **제3안(조석영, 주용완)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학교 또는 주거시설 인접지역에서 성매매는 죄질이 중한 범죄이

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2) 19세 미만 대상 범죄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의견이 일치됨

(나)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성매수)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견 일치

(다) 동종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성매수)

- 동종전과에 성범죄를 포함시키되,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제한하여 '동종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의견 일치

(라)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성판매 강요)

-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

(마) 처벌불원(성판매 강요)

- 19세 이상 대상 범죄와 동일하게 의견이 일치됨

8.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2013. 4. 5.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약취·유인 범죄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됨 → 기존의 일부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됨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약취·유인 범죄의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나. 주무위원 검토 결과 요약

(1) 범죄군 명칭 변경

- 형법 개정 결과 형법 제31장의 장(章) 명칭이 기존의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군 명칭을 '약취·유인 범죄'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로 변경

(2)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가) 대유형 명칭 변경

- 현행 대유형 명칭은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새롭게 신설된 모집·운송·전달이 위 대유형에 추가되어야 하므로, 대유형 명칭을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로 변경함이 타당함

(나) 유형분류

○ 5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기존에는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형법 및 특가법 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단순 약취·유인(법정형 : 10↓) 이외에 법정형이 거의 비슷한 단순 인신매매(법정형 : 7↓), 수수·은닉(법정형 : 7↓), 모집·운송·전달(법정형 : 7↓)도 위 유형에 포함시키도록 함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개정 형법에 따른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법정형 : 1년 ~ 10년)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법정형 : 2년 ~ 15년) 및 기존 양형기준의 제2유형(비난 목적의 약취·유인 등)에 포함되어 있던 재물취득 목적 약취·유인(법정형 : 무기, 5↑)은 법정형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각각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약취자 등의 국외이송은 법정형(2년 ~ 15년)을 고려하여 제3유

형에 포함시키도록 함

■ 제5유형(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기존의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을 제5유형으로 함

■ 기존 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수정안에 따른 유형의 정의

- 제1유형(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	형법 제292조 제1항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
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 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 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 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제5유형(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다) 권고 형량범위

- 법률 개정이 없는 아래 제1, 4, 5유형은 현행 형량범위를 유지하

고, 신설되었거나 법정형이 변경된 제2, 3유형은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형량범위를 일부 수정 또는 새롭게 설정하도록 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라) 양형인자

-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된 구성요건인 모집·운송·전달도 수수·은닉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단순 약취·유인에 비하여 다소 낮고 행위태양도 종범에 가까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자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취·유인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약취자 등이 타인의 실력적 지배에서 자유로운 생활관계로 복귀하도록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큼
 - 따라서,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삭제
 - 상습범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인자도 삭제되어야 함

(3) 약취·유인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가) 유형분류

- 현재는 대상범죄가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뿐이며, 소유형은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취·유인의 목적에 따라, ① 단순 약취·유인, ② 비난 목적 약취·유인, ③ 살해 목적 약취·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의 상해(형법 제290조 제1항) 및 치상(형법 제290조 제2항)의 죄가 신설되었으므로, 위 신설범죄들도 대상범죄에 포함되어야 함
- 한편, 위 개정 형법은 약취·유인·매매 등의 목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약취·유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행위태양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① 피약취자 등 치상, ② 피약취자 등 상해, ③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으로 소유형분류를 함이 타당
- 다만, 비난할 만한 목적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처벌을 차등화 하도록 함(현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난할 목적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기존 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2	피약취자 등 상해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 수정안에 따른 유형의 정의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나) 권고 형량범위

○ 주로 새롭게 신설된 범죄이며, 기존 통계자료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인질상해·치상			

(다) 양형인자

○ 자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추가

- 기본범죄(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는 그 목적 유무 및 그 목적의 내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범죄에 비난할 만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서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4)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개정사항 없으므로 현행 유지

(나) 양형인자

○ 자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5)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유형분류

- 현재는 대상범죄가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뿐이며, 위 두 범죄를 하나의 소유형에 포함시켜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음
-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의 살해(형법 제291조 제1항) 및 치사(형법 제291조 제2항)의 죄가 신

설되었으므로, 위 신설범죄들 중 과실에 기한 치사는 대상범죄에 포함되어야 함(고의에 기한 살해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살인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 한편, 위 '치사'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기존의 인질치사(무기, 10↑) 및 특가법상 약취·유인치사(사형, 무기, 7↑)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소유형과 별도의 소유형을 창설하도록 함

- 기존 유형분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 수정안에 따른 유형의 정의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 제2유형(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나) 권고 형량범위

- 신설된 아래 제1유형은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법률 개정이 없는 아래 제2유형은 현행 형량범위를 유지하도록 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다) 양형인자

○ 자수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매매·이송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인자에 매매·이송 부분을 추가하도록 함

다. 검찰위원 의견 요약

(1)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주무위원의 유형분류안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권고 형량범위에 대하여는 일부 이견 있음(주무위원과 다른 부분을 밑줄로 표시)

(가) 약취·유인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2년- 3년6월	3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이상

(나)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3년 - 6년	5년 - 8년	7년 이상

(다)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양형인자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소극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가 필
요하다는 의견 제시

IV. 향후 일정

- 제78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 일정 미정